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4. 8. 1.(금) 09:4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허원제 부위원장 (1인)

---

##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09시 4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19명이 신청하였습니다.

###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4년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지난 회의·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27차 회의의 속기록, 제29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30차와 제31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 최성준 위원장

- 제30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1건과 제31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2. 국회에서 요구한 회의록·속기록 제출 의결

###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국회에서 2014년 제4차(1.28) 회의의 속기록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차수의 회의 내용 중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비공개 회의 내용 중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위원과 사무국 보고자의 성명을 음영 처리하여 열람형식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2014-32-096)

###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3>번 추진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11월 20일과 12월 27일 개정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보고를 드린 바 있고, 그다음에 2013년 11월 22일 ~ 2014년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5월 29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과징금 부과 제도 개선입니다. 업무정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에 본인확인 업무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구체적 위임 근거 마련입니다. 현재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위임 근거가 없음에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 부과기간 상한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과징금 징수채권 소멸시효 5년에 맞춰서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 부과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과징금 체납시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체납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 국세청장에게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과세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조치제도 개선 및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첫 번째,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신설하였습니다. 임시조치기간 중에 게재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제기 이후 후속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임시조치기간 중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포털 등은 해당사안을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고,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조치기간 만료 후에 해당정보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명예훼손분쟁조정기능 강화입니다. 방심위 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상임1인 포함)으로 구성하고, 방통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조정기간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조정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밑에 당구장 표시에서 보시다시피 임시조치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로 송부된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조정으로 10일 이내에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효력은 조정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앞에 말씀 드린 내용을 대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업계 자율심의 강화입니다. 자율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포털 등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임의의 임시조치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인터넷이용자 피해구제센터 설치 근거규정 신설입니다.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한 상담·접수 등이 가능한 ‘인터넷이용자 피해구제센터’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제출 의견 및 검토결과입니다. 과징금 제도 개선 관련해서 먼저 본인확인기관과 관련된 일괄적인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보다는 서비스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예고 기간 중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의견은, 법률에서 과징금의 상한을 정하고 향후 하위 법령 개정시 매출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조치제도 개선 및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 강화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조정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는 입법례는 소수이며,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내용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서는 수락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유지하되,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수락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의 성립 시점을 보완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정의 성립 시점은 조정조서가 각 당사자에게 통보된 경우로 명확히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오늘 의결하시면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에 9월 중에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우선 추진경과에 작년 11월 20일과 12월 27일에 전체회의에 보고했다고 되어 있는데 두 차례 보고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11월 20일에 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소관의 본인확인기관 과징금 관련된 사항을 한 것이고, 12월 27일에는 임시조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망법...

○ 이기주 상임위원

- 내용을 나눠서 보고한 것입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리고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기간이 한 3개월 되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의견이 있었습니까? 별로 없어 보이는데...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이 부분도 역시 양쪽에 관련된 사항을 합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아까 의견 낸 것 중에 주요제출의견 및 검토결과에서 과징금 제도 개선 관련해서 차등 적용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에 대해 사무처 검토의견의 용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법률에서는 과징금의 상한을 정할 뿐이며' 이런 말이 있는데 '법률에서는 과징금의 상한을 정하고, 향후 하위 법령 개정시 매출 규모에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기준 마련 예정'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앞에 '정할 뿐이며' 이 말이 낱앙스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임시조치제도 개선 및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 강화는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사실상 임시조치제도가 운영되어 왔지만 그 제도 자체가 불완전해서 실제로 많은 활용이 안 되고 있었던 것에 비해 이번에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다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단지 한 가지 의견은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한다는 내용, <붙임>의 전체 조문을 보니까..., 이것이 제44조의10입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44조의10제1항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체 문장을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분쟁조정을 담당하는지는 알겠는데, 그 뒤에 또 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 위원회는 여러 개별법에서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이야기하는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명칭을 누구든지 알기 쉬운 것으로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 앞에 '정보통신'이라고 붙이든지, 아니면 '인터넷' 아니면 '온라인' 이런 것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에 그 셋 다 괜찮은 대안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하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든지, 아니면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 본문에 '온라인'을 붙이든지 이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처음 말씀하신 표현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할 뿐이며'를 '정하고'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명칭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우선 법령의 명칭은 가능하면 외국어·외래어를 표기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디지털 문화, 디지털 관련 법령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명예훼손'보다는 '온라인명예훼손'이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문제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기존 방심위에 있던 명예훼손조정부를 떼어내어 독립시켜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검토할 때 필요한 것은 우선 정부 예산과 인력의 낭비요인이 없느냐, 꼭 그럴 만한 사안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온라인상 여러 가지 논쟁이나 문화를 봤을 때 필요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분쟁조정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설기구를 따로 둬으로써 불필요한, 어떤 경우에는 악의적인 분쟁을 촉발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한 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민해 봤는데 시행해 보고 또 다시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이용자 편에서 봤을 때에는 법정으로 바로 가기 전에 정부기구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여기에서 좀 더 간단하게 소송비용을 들이지 않고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면 좋겠지요. 그것이 악용될 소지가 없는지, 그래서 그 악용될 소지를 방지할만한 장치를 좀 더 둘 필요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명칭과 관련해서 지금 단순히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 했을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분쟁과 관련해서도 다루지 않느냐 해서 이용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명확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4페이지 인터넷이용자 피해구제센터 설치에 보면 인터넷이용자 피해구제센터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온라인 내지는 우리말로 하면 정보통신이 되는데, 우선 이기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 하시는 것에 저도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좀 더 좋은 표현들이 있다면 업무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명칭으로 만들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불필요한 예산이나 인력을 투입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심위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이런 조정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사무국이 있어야 될 텐데 사무국의 인원이나 예산은 처음에 작게 시작하고, 조정건수가 늘어나는 추이를 봐 가면서 점차적으로 소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온라인 이용자들이 불필요하게 이런 분쟁이 많이 생기는 부분, 조정건수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회의 운영규칙을 통하든지 아니면 혹시 시행령이나 규칙에서 조정대상을 합리적인 것으로 제한하는 것을 통해 혹시 있을 수 있는 그런 걱정되는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김재홍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 악의적인 이용으로 인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지금 이기주 위원님께서 일단 법에 기본적인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 운영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보완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은 이렇게 개정하고 그것을 시행하는데 부작용이나 악용·남용이 없도록 하는 장치를 시행령에 두도록 주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신문·방송에서 일종의 명예훼손뿐만 아니고 다른 분쟁 같은 것, 언론중재위원회가 하는 역할을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 문제에 관해서 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를 벤치마킹, 그것보다는 언론중재위원회 신문독자나 방송의 시청자보다는 온라인 매체, 온라인미디어의 이용자들이 훨씬 많아졌고 그 문화도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더 논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불필요한 분쟁조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여과하는 그런 장치를 시행령에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 안, 그다음에 그 밖의 안이 있을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우선 명칭을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좋다는데 의견은 다 일치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그 앞에 붙이는 명칭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의견으로 보면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령 개정안 제44조의10제1항에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앞에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논의가 모아졌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 질문 드리고 명확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보고가 됐고, <붙임 1> 16페이지 제44조의10제3항에 보면 내용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위원회 보고안과 오늘 의결안에서 달라진 부분이 위원들의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취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붙임 1> 16페이지를 보시면...

○ 최성준 위원장

- 제44조의10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항제1호 이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자격요건을 명시했는데 취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인데 당초 안은 ‘방송통신에 관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었던 것을 ‘방송, 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 관한 이하’ 이런 내용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방송통신과 관련된 부분이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방송, 언론,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서도 위원회 자격요건을 이런 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용해서 좀 더 위원회 풀(Pool)을 넓히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여기에는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결격사유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지요?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그렇습니다.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제44조의12(임시조치 직권조정) 관련해서 제4항에 보면 '제3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직권조정결정의 효력은 상실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직권조정결정은 해당 정보를 삭제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해당 정보가 그대로 게시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임시조치를 해제하라고 할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그 두 가지겠지요?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직권조정결정의 효력은 상실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3항은 직권조정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해당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해당 정보 삭제결정을, 직권조정결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해당 정보의 게시자가 이의신청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는 해제해야 하지 않습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다면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사람이 주장을 해서 일단 임시조치가 되고, 그다음에 게시자가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게시물은 그렇지 않다고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서 명예훼손분쟁조정부로 왔는데, 일단의 판단은 그것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가 되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삭제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임시조치가 해제된다는 이야기는 곧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의미지요?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복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결론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물론 임시조치를 오래 가져가는 것은 말 그대로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지만 그래도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일단의 결정은

그 정보는 삭제하는 것이 맞겠다, 물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아직 안 받은 것이지만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냥 임시조치를 해제해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이 부분은 개정안을 마련할 때 논의한 부분인데 복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복원을 하면 계속적인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있기는 하지만, 임시조치라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이 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일단 흘렀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복원된 것으로 인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게 될 텐데 결국 복원된 것으로 인해 피해가 더 크게 된 부분은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 최종적으로는 정보게재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이것은 아주 사소한 것인데 보고를 받고 조문을 보다가 문득 들은 생각입니다. 조정의 효력과 관련해서 제44조의13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정조서를 각 당사자에게 통보한 경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 관계기관 의견 중에 조정의 성립 시점을 보완하여 명확하여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각 당사자에게 통보된 경우’로 명확히 규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절차는 아까 말한 것처럼 조정조서가 상대방에게 통지가 되거나, 또는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일단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결정이 그다음에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삭제든지 또는 임시조치를 완전히 해제한 것이든지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해당 당사자들이 그것을 포털에 제출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 경우에 거기에 따른 별도의 집행절차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까? 조정조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그 효력시점은 정했지 않습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더라도 예를 들면 인터넷 포털 같으면 포털에 ‘이렇게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라고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면...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것은 시행령에서 그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날짜 하루 이틀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넷 상에서는 이것이 삭제가 된다는지 임시조치가 풀린다는지, 하루 이틀이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조서가 쌍방에게 동일한 날짜에 통보가 안 되고 다르게 통보될 수 있는데, 그때는 언제가 최종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을 시행령을 만들 때 구체적으로 넣어서, 이것이 하루하루가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논의가 정리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법이라는 것의 제정이나 개정을 보면 입법취지와 목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희가 임시조치 이의제기권 신설이나 그다음에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것들을 보면 제가 알기로 인터넷 임시조치에 대해서는 이것이 게시글에 대한 삭제제도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포털의 임의삭제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의 위반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즉, 다르게 말씀 드리면 지금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일정 정도 인터넷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안건 본문에는 그런 표현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부분으로, 이의제기권이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회의 보고 안건에는 그러한 부분을 표현하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법이 제정되고 시행이 되면 그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용자들, 물론 사업자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훨씬 더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반면에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법이 바뀌는 취지들에 대해 명확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임시조치 이의제기권 신설이나 명예훼손과 관련된 기능을 강화하는 것들, 그다음에 업계의 자율심의를 강화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증진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것들이 외부적으로 강조될 수 있도록 후속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유념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포털의 게시물에 대해 통지를 하면 30일간 임시조치를 취하게 되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통지가 있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되면 지금 현행법에 의할 때 게시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30일이 지나서 포털이 이것을 삭제하게 되는데, 만약에 개정법 말고 현행법에 의할 때 게시자가 '그것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가 아닙니다'라고 할 때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포털이 임시조치를 할 경우에는 양 당사자에게, 소위 말해서 피해자와 그리고 정보게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임시조치기간 3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는 있고, 포털에게 이의제기하면 포털은 통상 포털3사 중에 네이버, 다음의 경우 이의제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것을 방심위로 다시 심의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심위의 결정에 따라 해제할 것인지, 복원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자체 법제팀에서 내용을 검토해서 해제와 복원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와 같이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정보게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명확하지 않고 다양하게 각각 운영되고 있었던 것을 이번 기회에 법에 의해 통일적으로, 또 나름대로 독립적인 중립적인 기관이 권위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고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런 과정을 정리해서 입법의 취지가 어떤 것인지 알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아까 '정할 뿐이며'를 '정하고'로 하는 것은 보고서의 표현의 문제니까 큰 문제는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 법안에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 없으셔서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면 다음 회의는 8월 4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15분 폐회 】